



복지제도 개선내용 궁금해요?



2011.12

1 복지제도 개선 Q&A

Q1. 2012년도 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복지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trend에 맞는 다양한 복지니즈를 충족하고, 이원화된 복지제도 통합 및 개인별 복지내역을 포인트로 계량화하며, 복지제도를 간소화 시켜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Q2. 복지포인트라는 말이 나오는 데 복지포인트가 무엇인가요?

A 복지포인트란 개인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을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1포인트는 1원에 해당됩니다. 1 포인트는 1P 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Q3. 직원간 복지포인트 거래는 되나요?

A 안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수 없습니다.

Q4. 복지포인트는 언제 주나요?

A. 공통 :1월 130만P /7월30만P ,
필수 :1월
추가 :유,초,중교육비(3,6,9,12월), 인재육성 1월 30P

Q5. 내 복지포인트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인사시스템 > 복지 > 복지후생 > 선택적복지화면

Q6.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모두 사용해도 되나요?

A.아닙니다. 필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는 모두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인 건강검진,의료비,단체보험 포인트는 부여후 완료시점에서 회사에서 자동차감합니다. 13년부터 건강검진수준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잔여포인트는 자율포인트로 전환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 회사에서 일괄 차감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건강검진/의료비/단체보험과 연금저축/상조회비(가입직원만)입니다.

Q8. 연금저축/상조회비를 포인트로 지급한후 차감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A. 가입된 사원에 한하여 연초에 연간 포인트를 부여하되 필수포인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 관리화면에서만 부여후 차감되는 포인트입니다. 즉 연금저축/상조회비 본인부담금과 회사에서 부여된 포인트가 합산되어 해당 금융기관으로 불입됩니다.

Q9. 2012.2.1일 신입사원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공통포인트는 1월과 7월에 지급함에 따라 2.1일부터 6.30일까지 잔여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인재육성 포인트는 1월에 지급함에 따라 2.1일부터 12.31일까지 잔여기간 동안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기타 다른 포인트는 별도의 지급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10. 퇴직후 복지복인트 잔액이 있을 경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퇴직일의 익년도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카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Q11. 휴직자인 경우 포인트 부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창업휴직후 1년이 초과된 휴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Q12. 올해 부여받은 복지포인트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재직사원인 경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퇴직일의 익년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Q13. 건강검진비용이 부여된 복지포인트보다 적은 경우는 잔여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A. 13년부터 건강검진후 잔여포인트는 자율포인트로 자동전환되어 자율 사용가능합니다.

Q14. 복지포인트로 변경시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 병원에서 하시게 되며, 2013년부터 검진 수준을 본인이 선택 후 잔여 포인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은 법적 의무항목으로 반드시 기본항목 포인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Q15. 교육비도 포인트로 부여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항목은 복지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중/고/대학학자금 및 본인 학자금(구ktf)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Q16. 공통 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하면 되나요?

A.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Q17. 인재육성 포인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 하나요?

A. 입사 10년차 이하이면서 만 40세 미만의 사원에게 부여되는 포인트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육/의료/레저문화/관광/쇼핑 등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구 ktf 직원에 한함)

Q1. 연금저축 가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사시스템 접속 > 복지후생 > 연금저축등록 화면에서 금융기관별 상품설명서 검토 후 금융기관선택 및 가입금액 입력 저장하시면 선택하신 금융사에서 개인별로 연락 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Q2.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불가합니다.
신청기간내 신청화면에서 선택한 금융기관 및 연금상품(계좌)으로만 지원가능합니다.

Q3. 연금저축 금융기관이나 연금상품(계좌) 변경 가능한가요?

A. 변경불가합니다.
가입당시 금융기관, 연금상품(계좌)로 10년간 지원되므로 변경시 지원중단사유에 해당 됩니다.

Q4. 연금저축 가입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인사시스템상 연금저축 가입은 신청기간은 2012.1.2~2012.1.9 까지이며,
금융사-개인간 청약 기간은 2012.1.2~1.12일까지 신청 완료를 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Q5.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납입금액의 100%로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400만원한도입니다.

3 의료비

Q1.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무엇인가요?

A.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입원의료비)한 경우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통원의료비)에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Q2.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직중인 직원 및 직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 자녀입니다.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인사가족사항 등재기준으로 일괄가입 후 연말정산 자료 등을 통해 미대상 제외)

Q3. 2011년도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2012년 상반기에 기존 의료비 신청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마감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Q4.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금 청구서 작성(인사시스템다운로드) -> 출력 -> 자필서명한 보험 청구서 및 영수증 스캔자료를 (주)동우기획[보험대리점]으로 메일 또는 FAX 전송하시면 됩니다.
(e-mail : ktdongwoo@paran.com FAX : 0502-755-1004)

Q5. 개인적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입원 의료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가요?

A. 정부방침에 따라 2003년 10월 1일 이후부터 중복 보장은 불가합니다.
단, 입원 일당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Q6.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이 있으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에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A.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를 동우기획으로만 할 경우 비례보상에 따라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되므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Q7. 2012년부터 실손의료비보험으로 추가 가입되는 배우자,자녀에 대해 이미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2012년 최초가입시에는 일괄가입(입원의료비형, 통원실손의료비형)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1월중 별도 변경기간을 두어 입원의료비 유형 선택 및 통원실손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 의료비보험이 있는 분에 한해 미가입선택이 가능하며 해당 포인트를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Q8. 한방병원을 이용한 경우나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한방병원과 치과치료 입원의 경우는 보험급여 외에 비급여도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비용과, 보철(금니,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은 제외됩니다.

Q9. 병실료 및 식대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병실료의 경우, 기준 병실료(보통 6인실)과 병실료와의 차이 50%를 보상합니다.

단, 기준 병실료와의 차이액은 1일 한도 10만원

Q10. 임신중 초음파 검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그 외 출산과 관련된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단,기형아,양수검사는 제외)

Q11. 통원의료비 및 본인부담금(종합병원 20,000원 공제,일반,약제비 공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 통원의료비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동네병원(1차진료기관)은 1만원, 중형병원(2차진료기관)은 1.5만원, 대학/종합병원(3차진료기관)은 2만원, 약제비 8천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1일 통원을 한 비용이 7만원이고 약제비가 1만원이라면, 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제외한 5만원과 약제비 8천원을 공제한 2천원, 합산 5만2천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Q12. 의료비의 경우 1년치를 모아서 해도 상관이 없나요?.

A.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 이므로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기간(1/1~12/31)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청구하시는 기간(1년) 사이에 보험사가 변경되면 각각 담보하는 기간별로 나누어 2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13. 치과진료로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하면 20만원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 목적으로 시술되었고,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비급여로 분류하고 있는 보철(금니,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은 제외됩니다.

Q14.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수혜를 받으려면 정확히 기준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A. 실손의료비는 보험기간 중 사고가 일어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고란 상해사고의 경우 상해 발생일, 질병인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입원의료비의 경우 입원 중에 보험기간(12/31)이 종료되어 보험사가 변경된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라도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는 계속 입원이 이어지는 경우 이전 보험사에서 보장합니다.

Q15. 가족의료나 단체보험이나 가입에 따른 가입증서, 증권을 개인에게 보내주나요?

A. 현재 단체계약 증권, 영수증, 약관 등은 계약자(KT)에게 송부하여 피보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이나 약관은 현실적으로 수 천, 수 만 명 되는 피보험자 전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PDF 파일 등으로 열람하실 수는 있도록 자료실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Q16. 부부사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겹치는데, 가입선택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 부부사원인 경우 기본적으로 각각 사원자격으로만 가입가능하며 배우자자격으로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사원 양쪽에 등록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자사원이 가입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명인데 1명씩 부부사원 각각의 가족사항으로 등재된 경우는 등재된 사원을 기준으로 가입선택하면 됩니다.

Q17. 의료비단체보험도 포인트 지급 후 일괄차감하나요?

- A. 최종 가입결과에 따라 일괄차감합니다. 미가입 선택시에는 해당 잔여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Q18. 입원일당을 선택 한 사람은 입원의료/입원일당 선택사항을 내년 초 변경 가능한가요?

- A.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중 이미 선택완료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없이 일괄 가입하였으므로 1월 중에 가입선택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기간 동안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통원실손형으로 가입됩니다

4 상호부조 (선택적 복지포인트 미대상)

Q1. 상호부조 제도가 무엇인가요?

- A. 임직원 상호간에 일정한 금전을 정기적으로 거출하여 적립 후 임직원의 애경사 발생시 부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2. 상호부조 제도의 가입자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A. 재직중인 임직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당연히 상호부조 제도에 가입되게 됩니다.

Q3. 상호부조비는 어떻게 납부 해야 하고, 거출금액은 얼마인가요?

- A. 매월 급여에서 2만원씩 공제되어 상호부조비로 납부하게 됩니다.

Q4. 연금저축 처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나요?

- A. 상호부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임직원이 납부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Q5. 상호부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며 본인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 A. 상호부조금은 보장성 보험상품 가입을 통해 운영되게 되며, 보험의 위험제한 기능(umbrella effect)에 따라 경조사가 초과 발생하게 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재원에서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여 상호부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한 후 중도인출을 통해 재직기간 동안 수혜를 받지 못한 직원의 본인 거출금을 환급하게 됩니다.

Q6. 경조사 발생시 상호부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상호부조의 본래 특성에 따라 회사의 경조금 지원과 달리 본인이 아닌 부서장이 신청/승인함으로써 보험금 방식으로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증빙자료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Q7.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요?

- A. 전체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상호부조 제도는 임직원 애.경사 발생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상호부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전통 문화입니다. 제도의 취지상 경조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 위주로 가입하게 될 경우 상호부조제도의 운영될 수 없으므로 임직원 모두의 가입이 필요합니다.

Q8. 부부사원의 경우 동일한 지급사유건으로 각각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원별로 각 2회씩 4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재직기간중 경조사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돌려주나요?

- A. 회사에서는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GWP 제고를 위하여 임직원이 부담한 금액만큼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동안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본인 납부액의 1.1배(최대 264만원)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납입기간 10년 경과자로서 10년내 수혜실적이 없는 자는 납입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부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조치 방안마련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Q10. 제도의 제외대상(인턴, 전문프로젝트, 일반계약직)은 가입할 수 없나요?

- A. 가입이 불가합니다.. 상호부조 제도는 재직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재원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상의 문제점 및 장기간 근무가 요구되는 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Q11. 증빙서류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기준일 인지? 아니면 실제 결혼일(청첩장, 사진 등) 기준 인지요?

- A. 상호부조 제도는 실제 결혼식을 축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조하는 취지 이므로 실제 결혼식이 이루어 져야 하며, 혼인신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신고일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시면 지급됩니다.(단, 허위, 부당 신청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 및 승인처리 부서장에게 있음)

※ 사유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 거행하지 못하고 혼인 신고만 할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 결혼식을 완료하였으나 혼인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 1차 30일 이내 청첩장 및 결혼 일자가 표시된 결혼식 사진 제출, 최종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Q12. 2011년도에 결혼을 하고 2012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2011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 A. 지급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결혼일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2012.1.1 이후에 거행된 결혼식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이와 반대로 2011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2년도에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상호부조제도가 보험가입 방식에 의해 운영되므로 보험계약법 (상법 제 4편)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중 하나인 "보험사고가 확정된 계약" 에 해당되어 이를 어길시 그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기 때문입니다.

Q13. 지급사유 발생시 관리자로부터 받은 '지급증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지요?

- A. 법적으로 인정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상 주말/휴일에 장례시 지급이 곤란 하므로 운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지급증서를 먼저 드린 것 입니다. 장례행사 종료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Q14. 소멸시효(보험금 신청 기한)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지급이 불가한지요?

- A. 불가합니다. 퇴직을 하였더라도 지급가능 기간내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Q15. 육아휴직, 재직전출 등 무급 휴직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상호부조비를 납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상호부조비는 보험료 형태로 납부되기 때문에 매월 연속적으로 납부 되어야 하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먼저 회사에서 대신 보험료를 납부 하고, 복귀 이후부터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납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월 4만원씩 공제하며, 잔여 회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일괄회수 합니다.

※ 분할기간 예) : 12개월 휴직 후 복귀시 → 복귀일로부터 12개월 분할 회수

Q16. 신규입사 및 퇴직의 경우 보험금 지급 유효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A. 기본적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입사원의 경우 최초 보험료 납부(급여공제) 이후 사유 발생분 부터 적용되며,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포함한 퇴직시 까지 사유 발생분에 대하여 인정 됩니다.

※ 효력발생 예시

- 신입사원 : 7.1일 입사, 최초보험료는 7.25일 납부 경우
- 7.24일 이전까지 사유 발생분(불인정), 7.25일 이후 사유발생분(인정)
- 퇴직시 : 최종 보험료 납부 7.25일(급여공제), 7.28일 퇴직
- 7.28일 사유 발생분 까지 인정(7.29일 이후 발생분은 불인정)

Q17. 재직기간 중 보험금 2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에도 계속 상호부조비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요?

- A. 예, 2회를 수령하였더라도 퇴직시 까지 계속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상호부조제도는 일종의 '계모임'형태이므로 수령하였더라도 계속 납부를 하여야만 재원이 마련되어 제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Q18. 상호부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경조금 신청 관련 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은 있는지요?

- A. 없습니다.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Q19. 사내 직원간 결혼하는 경우 본인 결혼으로 각각 수혜를 받은 것으로 수혜누적건수가 관리 되는지요?

- A. 네, 결혼 전 각각 경조금을 수혜하게 되므로 각각 1회 수혜로 관리됩니다.

Q20. 인사시스템에 가족사항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망 등 사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 A. 인사시스템에 가족사항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사유발생시 소속 관리자께서 당사자 주민번호 등 직접 등록을 하게되므로 오류확인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등재해 놓을 것을 권장드리며, 기존에 등록된 가족주민번호, 성명 등도 확인,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1. 개인이 납부한 상호부조비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A. 불가합니다. 개인이 납부한 금액은 일종의 '상호부조 회비' 입니다.
다만, 운영의 편리상 상호부조 회비를 회사지원 비용과 합산하여 회사명의(보험계약자 : kt)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